

의안번호	2204788
의 퇴 인	정태호 의원
회 답 일	2024. 10. 29.
추계번호	24A4423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4조의2 제1항제8호 (포상금의 지급)	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u>8. 국세의 부과·징수·송무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</u>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84조의2 제1항제8호 (포상금의 지급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국세청장이 국세의 부과·징수·송무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(제84조의2제1항제8호 신설)
 - 개정안에 따라 국세의 부과·징수·송무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- 다만, 국세의 부과·징수·송무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판단 근거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, 포상금 지급액도 객관적으로 추계할 근거가 부족하여 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해당
 - 포상금 지급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분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 따른 포상 대상자 규모와 지급되는 포상금 수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함

-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객관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, 포상금 지급액의 연도별 편차도 존재함을 감안할 때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

[표 1] 탈세제보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현황(2019~2023년)

(단위: 건, 백만원)

구분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.9.
1. 탈세제보 포상금						
－ 지급건수	410	448	392	372	435	290
－ 지급액	14,964	16,122	14,040	14,952	17,553	13,326
－ 건당 지급액	36.5	36.0	35.8	40.2	40.4	46.0
2.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						
－ 지급건수	29	31	27	35	38	11
－ 지급액	802	1,206	1,423	1,477	1,872	779
－ 건당 지급액	27.7	38.9	52.7	42.2	49.3	70.8

자료: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태정림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태정림	02-6788-4652	jitae@nabo.go.kr